



(이름) 피상속인 재산: <span style="float: right;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정보 제공 전용</span>	사건 번호: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span>
--	--

9. 장례 비용, 마지막 병치레 비용, 그리고 피상속인의 알려진 모든 무담보 채무가 지급되었습니다. (참고: 귀하는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및 그로부터 귀하가 받은 수입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0. 선언인 또는 선언인이 대신 행위하는 신탁 또는 기타 기관 또는 모든 선언인은 유언검인법 제130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항목 5에 기재된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승계인이며, 어떠한 다른 개인이나 기관도 피상속인의 해당 재산 지분에 대해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언인이 다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a.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해당 재산을 승계한 유일한 수익자 또는 모든 수익자입니다. (유언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 b.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유언검인법 제6401조 및 제6402조에 따라 재산을 승계한 유일한 사람 또는 모든 사람입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날짜: \_\_\_\_\_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

정보 제공 전용  
(선언인 서명)

날짜: \_\_\_\_\_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

정보 제공 전용  
(선언인 서명)

첨부된 추가 선언인의 서명

\*신탁 또는 다른 기관을 대신해 상속을 주장하는 선언인도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수익자가 된 기관의 이름과 선언인이 해당 단체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자격(수탁자, 최고경영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확인 증명서

(참고: 작은 종이 조각을 사용하여 추가 확인 증명서를 이 페이지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하나 이상의 추가 확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각 증명서를 별도의 8½ x 11인치 페이지 전지에 작성하여 이 양식에 각각을 첨부하십시오.)

공증인 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한 기타 공무원은 이 증명서가 첨부된 문서에 서명한 개인의 신원만을 확인하며 해당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유효성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운티(자세히 기재): \_\_\_\_\_  
 (날짜): \_\_\_\_\_ 에 (이름, 직책)의 면전에서:

직접 출석한 사람(각각의 이름): \_\_\_\_\_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문서에 이름이 기입된 사람임을 본인에게 입증하고 자신의 인가된 권한으로 문서를 이행하였음을 본인에게 인정하였으며, 문서에 있는 서명을 통해 개인 또는 그 개인이 대리한 기관이 문서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인의 서명과 공식 직인을 날인합니다.

(공증인 서명) \_\_\_\_\_

(공증인 직인)

[직인]

### 서기 증명서

본인은 첨부된 확인서 및 재산의 법적 설명(다른 첨부 문서는 제외)을 포함해 전술한 내용이 본인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원본 진술서의 정확하고 올바른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이 진술서의 인증된 사본에는 (1) 사망 진단서, (2) 유언장 또는 (3) 재산 목록 및 감정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언검인법, § 13202 참조))

날짜: \_\_\_\_\_ 서기, 서명: \_\_\_\_\_, 대리